

조 약

2006년 10월 23일 제4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11월 6일 서울에서 유명한 외교 통상부 제1차관과 Nenadi Esther Usman 나이지리아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07년 4월 27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3월 2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2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윤병세
외교부장관

●조약 제2227호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협정의 범위

제 1 조

대상 인(人)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또는 양 계약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 (1) 소득세
- (2) 법인세
- (3)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 (4) 농어촌특별세 및
- (5)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나이지리아의 경우,

- (1) 개인소득세
- (2) 법인소득세
- (3) 석유이윤세
- (4) 양도소득세
- (5) 교육세 및
- (6)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 (이하 “나이지리아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일체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 2 장

정 의

제 3 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 수역·해저·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현재 및 미래에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이후에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일체의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말한다.

나. “나이지리아”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 해저·하층토·그 상부의 수역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의 권리가 현재 및 미래에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륙붕에 관한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법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이후에 지정될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영해 바깥의 일체의 지역을 포함하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을 말한다.

다. “어느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이 규정하는 대로 한국 또는 나이지리아를 말한다.

라. “인(人)”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그 밖의 인의 단체를 말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각 체약국 법에 의하여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바. “기업”이라 함은 일체의 사업 영위에 적용한다.

사.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어느 한쪽 체약국과 관련하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2)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조합 또는 협회

자. “국제운수”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갖는 기업이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일체의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차.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경우 재무부 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말한다.

카. “사업”이라 함은 전문직업적 용역 및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 수행을 포함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에 동 어느 한쪽 체약국 법상 가지는 의미를 가지며,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적용가능한 세법상 의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다른 법상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에 우선한다.

제 4 조

거 주 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개인의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설립 장소·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기준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또한 동 체약국 및 동 체약국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때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만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때에는 동 인은 실질적 관리 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제 5 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작업장 및
 - 바. 광산·유정·가스정·채석장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된 그 밖의 장소
 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다음을 망라한다.
 - 가. 건축 장소, 건설·조립 또는 설치 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활동으로서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 나. 기술, 경영 또는 자문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이나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동일한 공사를 위하여 어느 한쪽 계약국 내에서 12월 기간 중 6월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
 - 다. 그러한 고정된 사업장소가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어느 활동을 위하여 달리 유지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판매대리점으로 사용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경우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배달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전시 또는 배달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들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 장소를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외의 인이 어

는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고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그 인의 활동이 제4항에 명시된 활동에 한정되어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동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업이 어느 한쪽 체약국내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그 밖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인들이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행하는 한 동 기업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동 기업과 그 대리인 간의 상업상, 재정상 관계에 있어 독립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대리인은 이 항에서 의미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러한 법인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제 3 장

소득에 대한 과세

제 6 조

부동산소득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광천·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배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7 조

사업이윤

1.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

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 계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계약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동 고정사업장이 아닌 다른 판로를 통하여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과 동일한 재화 및 상품을 동 다른 쪽 계약국에서 판매하거나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 직접 이윤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한 이윤은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계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다른 쪽 계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계약국 안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계약국이나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해당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그러나, 그러한 국제운수상 운항이 양 계약국 중 어느 한쪽 계약국의 기업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의 액수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수입의 1 퍼센트 및

나. 기업이 어느 제3국에서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여 취득한 수입에 부과되었을 더 적은 액수의 나이지리아 조세

이 항의 목적상, “수입”이라 함은 승객, 우편물, 가축 또는 재화를 다른 쪽 계약국에서 싣거나 태워서 수송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소득에서 국제운수상 그러한 운항에 관하여 지상 직원의 임금·급료의 환급액 및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3. 선박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선박 위에 있는 경우, 그 때에는 실질적 관리장소는 그 선박의 모항이 위치한 계약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며, 그러한 모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 운영자가 거주하는 계약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4. 제1항의 규정은 또한 공동출자사업·합작 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9 조

특수관계기업

1. 가. 어느 한쪽 계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계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어느 한쪽 계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계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 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 때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어느 한쪽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계약국이 그 계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계약국의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그 어느 한쪽 계약국의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이라면, 그 때에는 동 다른 쪽 계약국은 자국 세법에 따라 자국에서 그 이윤에 부과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협정의 다른 규정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계약국의 과세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 10 조

배 당

1.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계약국에서도 그 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배당의 수취자가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7.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

양 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과세한도의 적용 방법을 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향익 주식·향익권·광업 주식·발기인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채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채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쪽 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 다른 쪽 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 용역을 그곳에서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어느 한쪽 채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채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쪽 채약국은 배당이 그 다른 쪽 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 다른 쪽 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채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 할지라도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 11 조

이 자

1. 어느 한쪽 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그 다른 쪽 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채약국에서도 그 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7.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양 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과세한도의 적용 방법을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채약국의 정부·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중앙은행 또는 다른 쪽 채약국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 또는 다른 쪽 채약국의 정부·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중앙은행 또는 다른 쪽 채약국 정부 소유의 금융 기관이 보증하거나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과 관련하여 다른 쪽 채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그 어느 한쪽 채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과 "그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 (1) 중앙은행(한국은행)
- (2) 한국수출입은행
- (3)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보험공사

(5) 한국투자공사 및

(6) 양 계약국의 정부 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본을 소유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

나. 나이지리아의 경우

(1)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및

(2) 양 계약국의 정부 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정부가 자본을 소유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에 의한 보증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여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 조의 목적상의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이 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쪽 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계약국 자체·그 정치적 하부조직·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계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계약국 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때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계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이자 지급액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이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 12 조

사 용 료

1.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계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사용료는 그 다른 쪽 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도 그 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계약국에서 그 사용료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 그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총액의 7.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테이프 및 그 밖의 영상이나 음향 재생수단을 포함하여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컴퓨터 소프트웨어·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계약국 자체·그 정치적 하부조직·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계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그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계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계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 13 조

양도소득

1. 제6조에서 언급되고 다른 쪽 계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은 그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계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계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어느 한쪽 계약국 거주자가 다른 쪽 계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해당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가 50퍼센트 이상의 가치가 다른 쪽 계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취득하는 이득은 그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계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그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제 15 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 및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여·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다른 쪽 계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계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계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12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계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계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다른 쪽 계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계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그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16 조

이사의 보수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계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은 그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 그 자체로서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 18 조

연 금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19 조

정부 용역

1. 가. 어느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어느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어느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기관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영리활동에만 종사하는 은행 및 기관으로서 양 체

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환하는 서한에 명시하고 합의한 그 밖의 기관 및

나. 나이지리아의 경우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영리 활동에만 종사하는 은행 및 기관으로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교환하는 서한에 명시하고 합의한 그 밖의 기관

4. 어느 한쪽 체약국·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연관되어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0 조

학생 및 견습생

1.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으며, 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인가된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또는 그곳에서 사업 또는 기술 견습생으로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체제하는 개인은 그러한 방문과 관련하여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도착하는 일자로부터 다음에 대하여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의 생계유지·교육 및 훈련의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받는 모든 송금액 및

나. 그러한 목적상 그에게 이용가능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제공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모든 보수

2. 다른 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였고, 학술·교육·종교 또는 자선 단체로부터 또는 어느 한쪽 체약국 정부가 맺은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을 받는 수취자로서 단지 학습·연구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임시 체류하는 개인은 그러한 방문과 관련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 도착하는 일자로부터 다음에 대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러한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 금액 및

나. 그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받는 모든 송금액

제 21 조

교사 및 연구원

1. 종합대학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할 목적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교수 또는 교사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처음 도착하는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해 받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전기한 2년의 기간 동안, 그 다른 쪽 체약국은 또한 그에 대하여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받는 그러한 보수에 대해 조세로부터 면제한다.

2. 이 조는 그 연구가 공공이익이 아닌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익을 주목적으로 하여 수행될 경우에는 그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그 밖의 소득

1. 이 협정의 앞의 각 조에 다루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그 밖의 소득은 그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되는 소득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장

이중과세 배제 방법

제 23 조

이중과세의 배제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한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허용에 관한 한국의 세법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나이지리아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나이지리아의 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나이지리아에 납부할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제외한다)는 그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부할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는 나이지리아의 원천소득이 한국에서의 과세대상인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나이지리아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그 법인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그러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나이지리아에 납부할 조세를(이 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 허용되는 모든 나이지리아 조세에 더하여) 고려한다.

2. 나이지리아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한 나이지리아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허용에 관한 나이지리아의 세법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한국의 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한국에 납부할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제외한다)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나이지리아에 납부할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

된다. 그러나, 그 공제는 한국의 원천소득이 나이지리아에서의 과세대상인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나이지리아의 조세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나.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그 법인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나이지리아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그러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한국에 납부할 조세를(이 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 허용되는 모든 한국의 조세에 더하여) 고려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가목에 언급된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납부할 조세는 경제개발촉진을 목적으로 그 체약국의 조세경감·면세 또는 그 밖의 조세유인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되었을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조세 금액은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각각의 경우 배당·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가 되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한 역년의 첫 날로부터 시작하여 10년간 적용한다.

4.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항에 언급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취득하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고 다음을 고려한 후, 제23조제3항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기한 거주자는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어떤 인이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의 혜택을 위해 제23조제3항을 이용할 목적으로 어떠한 약정을 맺었는지 여부
- 나. 어떠한 혜택이 어느 한쪽 체약국이나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도 아닌 인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하여 사기·탈세 또는 조세회피 의 방지 또는
- 라. 권한 있는 당국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의 제출물을 포함하여 사건의 특정한 상황에 관련된다고 보는 그 밖의 모든 사항

제 5 장

특별 규정

제 24 조

무 차 별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국이 거주자인 개인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감면 및 공제를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거주자가 아닌 개인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9조·제11조제7항 및 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할 목적상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5.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그 밖의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적용한다.

제 25 조

상호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그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과세 당국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과세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도 불구하고 시행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앞의 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당국 자신 또는 그 대리인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 직접 통신할 수 있다.

제 26 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규정의 시행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양 체약국·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부과되는 모

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와 관련되는 국내법의 집행 또는 실시와 관련된다고 예견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제1항에 의하여 받은 모든 정보는 그 체약국의 국내법 하에서 입수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그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그 어느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 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

나. 어느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이 조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국으로부터 정보를 요청받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요청받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 수집조치를 사용한다. 전술한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을 받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이 어느 한쪽 체약국이 그러한 정보에 자국의 이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은행·그 밖의 금융 기관·명의인 또는 대리인이나 수탁자 자격으로 행하는 인이 보유하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그 정보가 인의 소유권 이해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7 조

조세징수 협조

1. 양 체약국은 조세청구권 징수에 상호 협조를 제공한다. 이러한 협조는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에 대한 적용 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이 조에서 사용되는 “조세청구권”이라 함은 과세가 이 협정 또는 양 체약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른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양 체약국·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와 관련하여 지불되어야 할 금액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금액과 관련된 이자·행정적 과태료 및 징수나 관리 비용을 말한다.

3.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청구권이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고 당시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그 징수를 회피할 수 없는 인에 의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경우, 그 조세청구권은 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으로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징수 목적상 수락된다. 그 조세청구권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청구권인 것처럼 자국의 조세의 시행 및 징수에 적용가능한 자국 법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의하여 징수된다.

4.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청구권이 그 체약국이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의 법에 의하여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청구인 경우, 그 조세청구권은 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으로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관리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수락된다. 그 다른 쪽 체약국은, 비록 그러한 조치를 적용할 때에 그 조세청구권이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할 수 없거나 그 징수를 회피할 권리를 가진 인에 의하여 지불되어야 하더라도, 그 조세청구권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청구권인 것처럼 자국의 법 규정에 따라 그 조세청구권에 관련된 관리 조치를 취한다.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이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상 수락한 조세청구권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성격 자체를 이유로 그 체약 법에 의하여 조세청구권에 적용가능한 시한의 대상이 되거나 어떠한 우선 순위를 부여받지 아니한다. 더구나,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이 수락한 조세청구권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 법에 의하여 그 조세청구권에 적용가능한 어떠한 우선 순위도 가지지 아니한다.

6.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청구권의 존재·유효성 또는 금액과 관련된 소송은 다른 쪽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기관에 제기되지 아니한다.

7.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이 요청한 후 다른 쪽 체약국이 관련 조세청구권을 징수하여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송금하기 전의 어느 시점이든지, 그 관련 조세청구권은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제3항에 의한 요청의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국 법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고 그 당시 그 체약국 법에 의하여 그 징수를 회피할 수 없는 인에 의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청구권

나. 이 조 제4항에 의한 요청의 경우,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이 그 징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국 법에 의하여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청구권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사실을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신속히 통보하며,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그 어느 한쪽 체약국은 요청을 보류하거나 철회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어느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과 모순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

나.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조치의 시행

다. 다른 쪽 계약국이 사안에 따라 자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의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징수 또는 관리 조치를 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 제공

라. 그 어느 한쪽 계약국의 행정적 부담이 다른 쪽 계약국이 취득하는 혜택에 비하여 명백히 불균형적인 경우, 지원 제공

제 28 조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구성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6 장

최종 규정

제 29 조

발 효

- 1. 양 계약국 정부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 요건이 준수되었음을 상호 통보한다.
- 2. 이 협정은 제1항에 언급된 나중의 통보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그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한국의 경우

-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되거나 공제되는 금액
- (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나. 나이지리아의 경우

- (1) 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되는 조세 및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는,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취득하는 소득 및 양도 소득에 대하여
- (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제 30 조

종 료

이 협정은 어느 한쪽 계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계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 연도후 매 역년 말로부터 최소한 6월 이전에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종료 통지를 함으로써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가. 한국의 경우

-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공제되는 금액

(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나. 나이지리아의 경우

(1) 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되는 조세 및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바로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2)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바로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기준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의 정 서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하였다.

1. 제5조제3항 다목과 관련하여, 광산·유정·가스정·채석장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을 위한 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그러한 손실이 발생한 일자로부터 4년의 기간동안 이월되어 동일한 사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 상계되는 것이 허용된다.
2.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계약국 기업이 다른 쪽 계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산업·상업 또는 학술 장비나 건물 또는 공공사업에 대한 조사·공급·설치 또는 건축을 포함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의 실제 사업 활동에 직접 귀속가능한 벌어들인 소득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어느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이면서 그 계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1명 또는 그 이상의 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신탁 또는 그 밖의 실체에 대하여, 만약 어느 한쪽 계약국이 동 법인·신탁 또는 그 밖의 실체의 소득이나 자본에 부과하는 조세액이(동 법인·신탁 또는 그 밖의 실체 또는 그 밖의 어느 인에 대한 환급·변제·불입금·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하는 모든 방식의 세액 경감 또는 상쇄를 고려한 후) 사안에 따라 동 법인의 자본 주식의 전부 또는 동 신탁이나 그 밖의 실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동 계약국의 거주자인 1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 수익적으로 소유할 때 동 계약국이 부과했을 조세액보다 상당히 적은 경우, 이 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렇게 더 낮은 세액이 부과된 소득의 9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이 그 계약국에서 수행된 투자 사업이 아닌 거래 또는 사업의 활발한 운영으로부터 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소득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권리가 진정한 상업상 이유가 아니고 이 협정을 이용할 주된 목적으로 창출되거나 할당된 경우에는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협정에 의한 혜택은 다른 쪽 계약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항목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인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또한 이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Desir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

Have agreed as follows:

**CHAPTER I
SCOPE OF THE AGREEMENT**

Article 1

PERSONS COVERED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2

TAXES COVERED

1. The taxes to which this Agreement shall apply are:

a) in the case of Korea:

(i) the income tax;

(ii) the corporation tax;

(iii) the inhabitant tax where charged by reference to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iv)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v) other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Nigeria:

- (i) the personal income tax;
- (ii) the companies income tax;
- (iii) the petroleum profits tax;
- (iv) the capital gains tax;
- (v) the education tax; and
- (vi) other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igerian tax").

2. This Agreement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ubstantial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CHAPTER II

DEFINITIONS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a) the term "Korea"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waters,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now and in the future;
- b) the term "Nigeria" means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including any area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as an area within which the righ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with respect to the sea bed, its subsoil, its superjacent waters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now and in the future;
-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Nigeria, as the context requires;

- d)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 e)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under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 f) the term "enterprise" applies to the carrying on of any business;
-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h) the term "national," in relation to a Contracting State, means:
 -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r the citizenship of a Contracting State;
and
 - (ii)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Contracting State;
-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that has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n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in the case of Nigeri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 k) the term "business" includes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and of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axes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Article 4

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incorporation,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and
-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 a) a place of management;
- b) a branch;
- c) an office;
- d) a factory;
- e) a workshop; and
-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relating to the exploration for or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also encompasses:

- a) a building site, a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but only if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last more than six months;
- b)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technical, management or consultancy services, by an

enterprise through employees or other personnel engaged by the enterprise for such purpose, but only if activities of that nature continue for the same project within a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six months within any twelve-month period; and

- c) a fixed place of business used as a sales outlet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such fixed place of business is otherwise maintained for any of the activities mentioned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not be deemed to include:

-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and
-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if such a person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specifi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at enterprise and the agent in their commercial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he wi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CHAPTER III

TAXATION OF INCOME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Article 7

BUSINESS PROFITS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are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However, when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obtains profits directly through outlets other than the permanent establishment, from sales in that other State of the same goods and merchandise as those sold through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r from the same business activities as those effected through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such profits should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a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Agreement,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2. However, if such operation in international traffic is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onl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paragraph 1 will not be applicable. In such a case, the tax charged shall not exceed the lesser of:

- (a) one per cent of such earnings; and

(b) the lower amount of Nigerian tax that would have been imposed on such earnings if they had been derived by an enterprise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in any third State.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earnings" means total income arising from the carriage of passenger, mail, livestock or goods loaded or shipped in the other State, less refunds and payment of wages and salaries of ground staff with respect to such operations in international traffic.

3. I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a shipping enterprise is aboard a ship,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situat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home harbour of the ship is situated, or, if there is no such home harbour,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operator of the ship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 Where

-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the taxation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Article 10**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a) 7.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1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 b)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se limitation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that other State.

Article 11

INTEREST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7.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inter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se limitation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der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s owned by that Government, or by any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respect to debt-claims, guaranteed or indirect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political subdivisions and local authorities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financial institutions owned by that Governmen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4.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3, the terms "the Central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owned by that government" mean:

a) in the case of Korea:

- i) the Central Bank (the Bank of Korea);
- ii) the Korea Export-Import Bank;
- iii) the Korea Development Bank;
- iv)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 v)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and

vi)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the capital of which is own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b) in the case of Nigeria:

- i) the Central Bank of Nigeria; and
- ii)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 the capital of which is owned by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 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exceeds for whatever reason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12

ROYALTIES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from which they are derived and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but where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subject to tax thereon in the other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7.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films, tapes and other means of image or sound reproduc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computer software, any patent, trade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13

CAPITAL GAINS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deriving more than 50 per cent of their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and
-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Article 16

DIRECTORS' FEES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PERSON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perso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are exercised.

Article 18

PENSION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 b) However, such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by:
- a) in the case of Korea:
the Bank of Korea, the Korea Export-Import Bank,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the Korea Development Bank, the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or other institutions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provided such banks and institutions perform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nd only engage in non-profit-making activities; and
 - b) in the case of Nigeria:
the Central Bank of Nigeria or other institutions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provided such banks and institutions perform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nd only engage in non-profit-making activities.
4.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17 and 18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Article 20

STUDENTS AND APPRENTICES

1. An individual who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is or wa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primarily as a student at a recognized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r as a business or technical apprentice therein,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first-mentioned State on:

- a)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and training; and
- b) any remuneration for personal services render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with a view to supplementing the resources available to him for such purposes.

2. An individual who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visiting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temporarily present in that other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udy, research or training,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rom a scientific, educational, religious or charitable organization or under a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 entered into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 a) on the amount of such grant, allowance or award; and
- b) on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rticle 21

TEACHERS AND RESEARCHERS

1. A professor or teacher who visits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at a university or any other similarly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State and who, immediately before that visit wa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ed from tax by the first-mentioned State in respect of any remuneration received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State for such purpose. During the said period of two years,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also exempt him from tax in respect of such remuneration from the first-mentioned State in respect of the teaching or research.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not in the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Article 22

OTHER INCOME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Agree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CHAPTER IV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Article 23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 a) the Nigeri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dividends, tax payable in respect of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Nigeri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Nigeri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Nigeri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 b) in the case of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Nigeria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and which owns not less than 10 per cent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in addition to any Nigerian tax for which credit may be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the Nigerian tax payable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Nigeri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Nigeri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Nigeri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 a) the Kore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dividends, tax payable in respect of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Nigeri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Nigeri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Nigerian tax;

- b) in the case of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Nigeria and which owns not less than 10 per cent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in addition to any Korean tax for which credit may be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the Korean tax payable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3. The tax payable in a Contracting State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of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but for the legal provisions concerning tax reduction, exemption or other tax incentives of the Contracting State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amount of tax shall be deemed to be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in the case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paragraph 2 of Article 11 and paragraph 2 of Article 12, respectively.

This provision shall apply for a period of ten years starting from the first day of the calendar year when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of Article 23,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ing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eing income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not be deemed to have paid tax in respect of such income where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Contracting State consider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grant the benefits of paragraph 3 of Article 23 to the said resident, having regard to:

- a) whether any arrangements have been entered into by any person for the purpose of taking advantage of paragraph 3 of Article 23 for the benefits of that person or any other person; or
- b) whether any benefit accrues or may accrue to any person who is neither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nor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 c) the prevention of fraud, evasion or avoidance of the taxes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or
- d) any other matter which the competent authorities consider relevant i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any submissions from a resident of either Contracting State.

CHAPTER V**SPECIAL PROVISIONS****Article 24****NON-DISCRIMINATION**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3. Nothing contained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obliging either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individuals not resident in that State any of the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deductions for tax purposes which are granted to individuals as residents.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s 7 and 8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Article 25**MUTUAL AGREEMENT PROCEDURE**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taxation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including through a joint commission consisting of themselves or their representatives,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is Agreement.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judicial decisions.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Article 27

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lend assistance to each other in the collection of revenue claims. This assistance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Article.

2. The term "revenue claim"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an amount owed in respect of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is Agreement or any other instrument to which the Contracting States are parties, as well as interest,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costs of collection or conservancy related to such amount.

3. When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is enforceable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and is owed by a person who, at that time, cannot,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prevent its collection, that revenue claim shall,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be accepted for purposes of colle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revenue claim shall be collected by that other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s laws applicable to the enforcement and collection of its own taxes as if the revenue claim were a

revenue claim of that other State.

4. When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is a claim in respect of which that State may, under its law,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with a view to ensuring its collection, that revenue claim shall,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be accepted for purposes of taking measures of conservanc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shall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in respect of that revenue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s laws as if the revenue claim were a revenue claim of that other State even if, at the time when such measures are applied, the revenue claim is not enforceable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r is owed by a person who has a right to prevent its collection.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3 and 4, a revenue claim accepted by a Contracting State for purposes of paragraph 3 or 4 shall not, in that State, be subject to the time limits or accorded any priority applicable to a revenue claim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by reason of its nature as such. In addition, a revenue claim accepted by a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or 4 shall not, in that State, have any priority applicable to that revenue claim under the law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6.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validity or the amount of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brought before the courts or administrative bodie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7. Where, at any time after a request has been made by a Contracting State under paragraph 3 or 4 and befor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collected and remitted the relevant revenue claim to the first-mentioned State, the relevant revenue claim ceases to be:

- a) in the case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3, a revenue claim of the first-mentioned State that is enforceable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and is owed by a person who, at that time, cannot,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prevent its collection; or
- b) in the case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4, a revenue claim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n respect of which that State may, under its laws,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with a view to ensuring its collec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promptly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State of that fact and, at the option of the other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either suspend or withdraw its request.

8.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b) to carry out measures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 c) to provide assistance i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not pursued all reasonable measures of collection or conservancy, as the case may be, available under its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 d) to provide assistance in those cases where the administrative burden for that State is clearly disproportionate to the benefit to be derived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28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 CONSULAR POST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 or consular post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CHAPTER VI

FINAL PROVISIONS

Article 29

ENTRY INTO FORCE

1.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tha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ied with.
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 a) in Korea:
 - (i)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source from amounts paid or credit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i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 (ii)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i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 b) in Nigeria:
 - (i)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source on income and taxes on capital gains derived by a non-resident, in relation to income and capital gains derived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i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 (ii) in respect of other taxes, in relation to income of the period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in which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rticle 30

TERMINATION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Agree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after the year in which this

Agreement comes into force. In such event, this Agreem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Korea:

- (i)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source from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 (ii)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Nigeria:

- (i) in respect of withholding tax on income and taxes on capital gains derived by a non-resident on or after 1st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immediately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and
- (ii) in respect of other taxes, in relation to income of any basis period beginning on or after 1st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immediately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Sixth day of November of the year 2006,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PROTOCOL

At the moment of sign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1. With respect to paragraph 3 c) of Article 5, it is understood that los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place of exploration for or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shall be carried forward and allowed as a set-off against its profits derived from the same trade of business for a period of 4 years from the date when such losses were incurred.
2. In respect of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7,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ells goods or merchandise or carries on business, including the survey, supply, installation or construction of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premises, or of public work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 profit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oul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income earned which is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actual business activity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 3. The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any company, trust or other entity that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is beneficial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that State, if the amount of the tax imposed on the income or capital of the company, trust or other entity by that State (after taking into account any reduction or offset of the amount of tax in any manner, including a refund, reimbursement, contribution, credit or allowance to the company, trust, or other entity or to any other person) is substantially lower than the amount that would be imposed by that State if all of the shares of the capital stock of the company or all of the interests in the trust or other entity, as the case may be, were beneficially owned by one or more individuals who were residents of that State. However,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if 90 per cent or more of the income on which the lower amount of tax is imposed is derived exclusively from the activ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other than an investment business, carried on by it in that Contracting State.
- 4.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if the right giving rise to the income or capital gains was created or assigned mainly for the purpose of taking advantage of this Agreement and not for bona fide commercial reasons. It is also understood that the benefi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be granted to a person that is not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tems of income or capital gains der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sixth day of November of the year 2006,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총 리 령

●총리령 제1148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3월 12일

국 무 총 리 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당직총사령의 근무명령 및 운영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